

<p>治에關한法律施行令 第24條第2項 등의 规定에 의한 1994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承認의 件과 1996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豫算案 등을 審查・處理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50條, 同法施行令 第20條3 및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第11條의 规定에 의거, 27人의 委員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p> <p>本構成決議案은 本議員 外 1人이 書面動議로 提出한 案을 第81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에서 審查한 結果 滿場一致로 運營委員會案으로 採擇하고 提案하게 된 것입니다.</p> <p>本構成決議案에 대한 자세한 内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滿場一致로 可決하여豫決特委의 活動이 원만하게 進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提案說明을 한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예 산결 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p> <p>제안년월일 : 1995.10.16 제 안 자 : 운영위원회</p> <p>〈주 문〉</p> <p>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전과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전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에 산안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p>	<p>2. 위원수는 27인으로 한다.</p> <p>〈제안경위〉</p> <p>1. 운영위원회 김종래의원 외 1인이 서면 동의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p> <p>2. 제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95.10.16)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p> <p>〈제안사유〉</p> <p>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9월 29일부로,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이 10월 2일부로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96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이 11월 11일까지 제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전과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전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p> <p>6. '95年度行政事務監查時期決定의件 (15時 36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1995年度 行政事務監查 時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地方自治法 第36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行政事務監查는 每年定期會의 會期內에서 10日 이내로 하도록 规定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查 時期를 運營委員會와 협의한 結果에 따라 11月 21日부터 11月 29日까지 9日間으로決定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	---